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0. 8. 28.>

시정완료 통보서

통보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통보 내용	어업(어획물운반업)·양식업의 면허·허가·등록 또는 신고 번호
	시정완료 내용
	시정 완료일 년 월 일

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통보인 (서명 또는 인)

광역시장
도 지 사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시정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현장 사진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